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발의년월일 : 2012년 5월 일
발 의 자 : 도정태의원외3인

1. 제정이유

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.

2.주요골자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
○ 효도수당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신청 및 방법, 지급시기,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～안 제7조)

- 4세대(世代) 이상 효 가정으로 성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함.
- 효도수당은 세대별 월 100,000원으로 하며,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함.
-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 구성 요건이 변동 된 때와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,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지함.
-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수당 전액을 환수함.

○ 효도가정의 사기진작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“효도 가정의 집” 표식을 제작·설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

다. 조례안예고 : 2012. 5. 7 ~ 5. 16(의견 있음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여 부	비고
성주읍 성산리 이병현	□ 지급기준 상향 ○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서 4세대가 함께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.	**반영(√) 미반영()** ○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고조시키자는 의견이므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.	

성주군 조례 제　호

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4세대(世代)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민속고유의 미풍양속인 전통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4세대(世代) 이상 효 가정"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.
2. "효도수당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부모 부양 등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지급대상은 4세대(世代) 이상 효 가정으로 신청일 직전 성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생자 및 최초신청시 가족 구성원이었던 자의 전·출입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4조(지급시기)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,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.

제5조(지급기준) 효도수당은 세대별 월 100,000원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급신청 및 방법)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［별지 제1호］ 서식에 의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, 지급통장사본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관계를 전산 및 현지 확인하여 ［별지 2호］ 서식에 의거 매월 20일까지 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효도수당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및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의 4세대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
2.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
3.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.

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고,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.

제8조(사기진작) 군수는 효도가정의 사기진작 및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 조례에 의거 효도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에 대해 “효도가정의 집” 표식을 제작·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지 제1호 서식〕

효도수당 지급신청서(제6조 관련)

지급신청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지급계좌	예 금 주		계좌번호 (금융기관명)	

가 족 구 성 현 황

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전 입 일	비 고

「성주군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날인 또는 서명)

성주군수 귀하

읍·면 현지사실 조사서

○ 조사내용 :

○ 조사결과 :

○ 조 사 자 : 직 성명 ㊞

〔별지 제2호 서식〕

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(제6조 관련)

연번	성명	주민 등록번호	주 소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	비고